보다나은 정부

법인사업자의 대표자 개인계좌 사용은 불법입니다

□ 차명계좌란?

✓ 사업자 본인이 아닌 **타인명의 계좌**는 차명계좌입니다

☞ 사업자가 가족, 종업원,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으로 거래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

□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?

✓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에 **사업용 계좌**를 사용하여야 합니다

☞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함(**법인 대표자 명의계좌는 차명계좌임**)

□ 차명계좌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?

✓ **고의가 아니어도 세무조사 대상**이 될 수 있습니다

✓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되면 **검찰 등에 고발**될 수 있습니다

✓ **높은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** 될 수 있습니다

☞ 탈루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

□ 차명계좌 사용 신고대상은?

✓ **법인**사업자 또는 **복식부기의무** 있는 개인사업자가 **타인명의**로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

☞ 간편장부 대상자 등 영세사업자도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

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입니다
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☎126로 문의하세요

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

부산지방국세청